

2024년도 혁신시제품 지정공고(공급자제안형 1차)

2024년도 제1차 공급자제안형 혁신시제품을 지정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2024년 2월 1일
조달청장

혁신시제품이란?

◆ 조달청 공고 지정분야로 지정신청한 상용화 직전 제품(또는 '제품+서비스')이 혁신성 평가와 조달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할 경우 정부 혁신시제품으로 지정

□ 혁신시제품 지정 개요

- 조달청장이 혁신시제품으로 지정하고, 지정기간 동안 수의계약 구매 가능
 - 지정기간은 3년이나, 지정대상 제품에 적용된 특허·실용신안 만료일자나 규제샌드박스 규제특례 심의(임시허가, 실증특례) 기간 등이 지정일로부터 3년 이내일 경우에는 해당 지정일까지를 지정기간으로 함
- 혁신시제품 지정관련 특례 : 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 제14조(혁신성평가) 제5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'혁신시제품 평가' 면제
- 지정된 제품은 혁신장터(<http://ppi.g2b.go.kr>)의 '혁신제품전용몰'에 등록

□ 관련규정

- 「조달사업에 관한 법률」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
-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6조 제1항 제5호 사목
-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5조 제1항 제8호 다목
- 「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」 ([조달청고시 제2023-34호\('23. 7. 21.\)](#))

1

대상과제(지정분야) · 지정대상 · 신청자격

□ 지정 분야

- 아래 혁신성장 지원 분야, 국민생활문제 해결 분야, 정책지원 분야 중 상세항목에서 해당 항목 1개 신청 (중복신청 금지)

구분	상세항목
1. 혁신성장 지원 분야	①미래자동차 ②드론 ③에너지신산업 ④바이오 헬스 ⑤스마트공장 ⑥스마트시티 ⑦스마트팜 ⑧핀테크 ⑨로봇 ⑩인공지능(AI) ⑪탄소중립
2. 국민생활문제 분야	안전, 환경, 건강, 복지, 교육, 문화, 치안
3. 정책지원 분야	① 수소기술 ② 무탄소 전원 ③ 우주산업 ④ 자동화 항만·선박시스템 ⑤ 저출산 대응

□ 지정 대상

- ①개발완성수준(TRL) 7~9단계에 이르는 ②상용화 이전의 혁신 솔루션(제품, 제품+서비스)으로 시범사용(최대 1년) 내 기술혁신 성능 확인이 가능한 제품

① 개발완성수준(TRL)

7단계	현장 적용 및 활용이 가능한 시제품 개발 완료 예) 실험실 테스트 多, 시험성적서(자체, 공인) 有
8단계	현장 요구사항이 반영되어 양산을 위한 검증 완료 예) 현장적용 사례 有, 실증완료 보고서 有
9단계	양산을 위한 모든 요건이 완료(시장출시 직전 단계) 예) 양산 준비 완료, 법정 인증 완료 등

② 상용화 이전

- 상업적 거래가 없는 것이 원칙이나, 아래 가, 나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예외적으로 신청을 허용함(증빙자료는 신청기업이 제시)

가. 신청제품의 매출액이 제품 단가의 10배 이내인 경우

나. 신청제품의 최초 매출이 지정신청서 접수마감일 기준 1년 이내인 경우

※ 단, 벤처나 등록물품을 혁신시제품으로 지정 신청 시, 최초 매출이 지정신청서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까지 허용

< 유의사항 >

1. 현행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**규제로 인해 상용화가 어려운** 제품(제품+서비스 포함)은 지정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,
 - ☞ 제안서의 「3」 '공공성'의 (7) 규제」 작성 시 예상되는 규제 요소 및 극복방안(예: 규제샌드박스 활용)을 명확하게 제시
2. 심사 및 지정 제외
 - ☞ 신청 제품의 물품식별번호가 '기지정 혁신(시)제품, 우수조달물품, 우수공동상표 물품, 다수공급자계약(MAS) 물품'의 물품식별번호와 동일한 경우
 - ☞ 동일한 물품식별번호로 혁신시제품 평가에서 탈락한 횟수가 **4회**에 달하는 경우
3. 「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'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'에 대해서는 대기업·중견기업 제안 불가

□ 신청 자격

- 제안제품에 적용된 기술의 권리를 보유하고 제조납품이 가능한 기업으로서, 지정 신청서 접수 마감일까지 아래 세 가지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

① 단독 참여: 제조 설비를 보유한 경우로서, 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

가. 「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」에 따라 제안제품(세부품명번호 10자리)을 **제조물품**으로 입찰참가 등록을 하고 **물품식별번호** 등록을 완료한 자

나. 제안제품에 적용된 특허 또는 실용신안(이하 '특허 등')의 권리자(전용실시권자 포함)로서 신청제품의 제조 및 조달 납품에 관한 모든 권한을 보유한 자

- 단, 「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직접 사업화하기 위하여 기술이전을 받는 경우는 '기술이전 업무협약서'로 대체하여 혁신시제품 평가를 받을 수 있으나

「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」 제16조에 따른 심사 및 지정 전까지는 특허 등의 권리(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 포함) 등록을 완료하여야 함

② **협업체 참여: 추진기업(기술보유기업) + 참여기업(제조기업)**

가. **추진기업:** 「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」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을 하고, 제안제품에 적용된 특허 등의 권리자(전용실시권자 포함)로서 신청제품의 제조 및 조달 납품에 관한 모든 권한을 보유한 자

- 단, 「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**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직접 사업화**하기 위하여 **기술이전**을 받는 경우는 ‘기술이전 업무협약서’로 대체하여 혁신시제품 평가를 받을 수 있으나

「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」 제16조에 따른 심사 및 지정 전까지는 특허 등의 권리(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 포함) 등록을 완료하여야 함

나. **참여기업:** 「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」에 따라 제안제품(세부품명번호 10자리)을 **제조물품**으로 입찰참가등록하고 **물품식별번호**를 등록한 자

< 유의사항 >

1. 특허등록원부의 등록권리자 확인
 - 신청서 접수 마감일 이전에 **법인사업자는 법인명으로, 개인사업자는 대표자명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**(출원 중인 경우는 신청 불가)
2. **공동권리자 또는 복수의 권리자가 있을 시, 약정서(공고서 별첨 서식) 제출**

③ 공동수급체 참여 : ‘신산업기술개발제품’에만 해당

가. 참여대상 : ‘신산업기술개발제품’으로 결정된 ①로봇, ②자율주행차, ③ 수소기술, ④무탄소전원 ⑤우주산업’에 한하여 공동수급체 참여 허용
※ 혁신제품 구매운영 규정 제2조 제17호에 의하여 결정

① (로봇) 세부품명번호 10자리 기준 ‘로봇’ 제품 또는 ‘로봇’이 핵심기술로 적용된 제품

② (자율주행차) 자율주행 기술이 탑재된 운송수단(승용차, 승합차, 트럭 등)

• 자율주행 기술은 3단계(Level 3) 이상 적용된 제품만 대상

③ (수소기술) 수전해, 수소충전소, 수소차량, 액체수소 운송선, 모빌리티용 연료전지, 발전용 연료전지, 수소터빈, 암모니아 합성·분해, 수소 저장·배관, 수소엔진 등 수소기술이 핵심기술로 적용된 제품

④ (무탄소 전원) 원자력발전, 재생에너지, 수소에너지 등이 핵심기술로 적용된 제품

⑤ (우주산업) 우주탐사, 우주수송, 우주산업, 우주안보, 우주과학 관련 제품

※ ‘정책지원’ 분야에 한해 위의 3가지(③~⑤)는 소재·부품도 혁신제품으로 지정 허용

⇒ 로봇, 자율주행차, 수소기술, 무탄소 전원, 우주산업 핵심기술 적용 여부는 ‘지적재산권’ 등을 통해 반드시 입증해야 함

나. 지정신청 방식

- 「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」 제46조 공동수급체(분담이행방식)를 구성하여 지정신청(‘별지16호’를 지정신청 시 작성하여 제출)

- 신청제품에 대한 기술권리(특허, 실용신안의 권리자(전용실시권자 포함))는 협정서에 따르며, 신청제품에 대한 제조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의 입찰참가등록증으로 확인

※ 지정신청기업은 ‘협정서’ 제8조의 분담내용을 명확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(분담 비율 기재 요망, 계약체결 및 대금 지급시 반드시 필요)

- 신청자격의 예외 적용 -

1. 제조물품 입찰참가 및 물품식별번호 등록

- 기한 내 상기 신청자격의 '①항 가호'와 '②항 나호'에 따른 제안제품(세부품명번호 10자리)의 제조물품 입찰참가 등록 및 물품식별번호 등록을 완료하지 못한 업체도 「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」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에 한하여 지정 신청 가능
 - ☞ 단, 이는 혁신시제품 평가 대상에 포함될 뿐 평가이후 지정 절차는 진행이 어려우므로 지정신청서 제출과 병행하여 제조물품 입찰참가등록 및 물품식별번호 등록 절차 추진 필요
- 물품식별번호 미발급 업체는 혁신장터 사이트에서 신청서 제출 시 공고에 첨부된 '신규업체 혁신시제품 온라인 신청 매뉴얼' 을 반드시 참고
 - * 혁신장터 → 혁신시제품 지정신청 → 신청공고 건 선택 → 공고상세 → 첨부파일

2. 특허·실용신안 권리 등록

- 특허 등이 출원 중인 경우는 신청 불가
- 단, 「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직접 사업화하기 위하여 기술이전을 받는 경우에는,
 - ☞ 해당 기술이 출원 중이라 하더라도 '기술이전 업무협약서' 제출로 지정신청 가능. 이 경우 혁신시제품 평가 대상에 포함될 뿐이므로 계약심사협의회 심사 전까지 특허 등의 권리(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 포함) 등록을 완료하여야만 지정 가능

2

신청 기간 및 추진 일정

□ 신청 기간

○ 접수 마감일시 : **2024. 3. 14. 18:00**시까지

회 별	신 청 기 간	지 정 분 야
공급자제안 제1차	2024. 02. 01. ~ 2024. 03. 14.	공고서에서 제시한 제안분야 중 상세항목에서 해당 항목 1개 신청 (중복신청 금지)

※ **접수 마감일시 이후 신청 불가**

※ **(마감일) 신청 폭주 등으로 전산장애가 발생 우려, 미리 신청 요함**

※ **(반려대상 - 보완요구 없으니 유의)** ① 신청 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, ② 공고에 첨부된 지정양식이 아닌 임의양식(카탈로그 포함)으로 제출한 경우, ③ 제안서 또는 규격서를 공란으로 제출한 경우

※ **(보완 등 검토) 신청기간 내 접수 완료된 건에 한하며, 제출서류가 일부 누락 또는 불명확한 경우 기한을 정하여 보완 요구 - 보완기간은 별도 통지 단, 보완기간 내 보완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보완 요청 내용을 반영하지 않을 경우 해당 자료는 평가 또는 심사에서 제외(서류 반려)**

※ 접수 마감일 이후 발급받은 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☞ 미제출로 간주

※ 자료 작성 및 제출 전 첨부된 **온라인 신청 매뉴얼**을 반드시 확인하시어 잘못 신청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□ 추진 일정

○ 최종 지정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접수 마감일로부터 약 4 ~ 5개월이며, 상황에 따라 일정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

구분	항 목	내 용	세부일정
업체	제안 접수	제안서, 규격서 접수	'24.2.1.~ '24.3.14.
조달청	서류 검토	제출 제안서, 규격서 보완	'24.3.15.~ '24.4.5.
	혁신시제품 평가	공공성평가 +혁신성평가	'24.4.15.~ '24.5.14.
업체/조달청	2차 서류 제출	특허적용확인서, 제조여부 확인 위한 현장실태조사 등	'24. 5.16. ~
조달청	혁신시제품 지정	공공수요발굴위원회 심의	'24년 6월말~

※ 혁신시제품 지정은 별도의 일정이 없는 경우, 각 분기말(3월말, 6월말, 9월말, 12월말) 결정

3

신청 방법

- 온라인신청: 혁신장터 → 혁신기업(바로가기 버튼 클릭) → 혁신시제품 지정 → [업체]지정신청공고 → 해당공고건 선택 → 신청

4

신청 서류

※ 지정양식은 공고 상세화면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.

혁신장터 홈페이지 → 혁신기업(바로가기 버튼 클릭) → 혁신시제품 지정 → [업체]지정신청공고 → 해당공고 선택 → 공고상세 → 첨부파일

- 1차 필수 제출 서류(반드시 모두 제출)

가. 해당 권리증(특허증실용신안등록증), 등록원부, 등록공보 사본 3종
- 등록번호별로 압축하여 하나의 파일로 제출

※ 반드시 제안제품에 적용된 국내특허(실용신안)만 제출

※ 혁신시제품 평가를 통과한 업체는 신청 당시 제출한 모든 권리에 대해 '특허 적용 확인보고서'를 제출해야 함

나. 혁신시제품 제안서(공고서 별첨 1)

다. 혁신시제품 규격서(공고서 별첨 2) ☞ 규격서 내 견본 참조

- 당해 제품의 특징점에 대해 기술, 특허가 적용된 기술부분과 시험 성적서의 시험항목, 결과치가 포함되도록 구체적으로 기재

- 1차 추가 제출 서류(해당할 경우 제출)

가. 혁신시제품평가 면제 사유 해당 하는 경우 : 임시허가 또는 실증특례 제품, 기술개발 지원 사업 결과 성공 제품 등 평가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서류 일체 제출

※ (제출서류) 실증특례확인서 또는 임시허가확인서, 사업개시확인서, 확인서 발행 기관 공문 등

나. 특허 등 적용기술의 권리자가 공동권리자인 경우: 약정서(공고서 별첨 3)

다. 「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직접 사업화하기 위하여 기술이전을 받는 경우로서 해당 기술이 특허 등 출원 중인 경우: 출원번호통지서 및 기술이전 협약서

라. 협업체: 협업승인신청서(공고서 별첨 4) 또는 「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39조의2에 따른 협업기업 선정 확인서

※ 지정기간 3년을 고려하여 협업기간을 설정하시기 바랍니다.

마. **자사 제품 중 혁신시제품 신청제품과 동일한 세부품명번호(10자리)로** 기지정된 혁신제품, 우수조달물품, 우수공동상표 물품, 다수공급자 계약 물품이 있는 경우: 기술·성능 비교표(공고서 별첨 5)

- 비교표에 기존제품 규격서 첨부 필수
- 협업체는 참여기업(제조기업)이 상기내용에 해당할 경우 제출

바. **공동수급체 협정서** : 「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」 제46조에 해당하는 신산업기술개발제품(①로봇, ②자율주행차, ③ 수소기술, ④무탄소전원 ⑤우주산업)에 대하여 공고서의 붙임 [별첨6]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

□ 2차 서류(공공성, 혁신성 평가 모두 합격 업체만 해당)

가. 조달청(조달연구원)에서 규격 검토를 완료한 ‘최종 규격서’

※ 최종규격서는 조달연구원에서 혁신장터에 업로드한 내용을 기업이 최종 확인 후 제출

나. 특허기술진흥원에서 발급한 ‘특허 적용 확인보고서’

※ 동 보고서는 특허기술진흥원에서 혁신장터에 업로드한 내용을 기업이 최종 확인 후 제출

다. 상용화 요건 증빙 서류

① 매출원장

- 매출이 없는 경우: 매출원장(신청기업의 전체제품 매출 내역)
- 매출이 있는 경우: 매출원장, 건별 세금계산서, 거래명세서

<매출원장 제출 기준>

- 제안제품의 **최초 공인 또는 자체 시험성적서*** 발행일부터 혁신시제품 지정 신청서 접수마감일까지

* 제안서 '② 제품정보-(2)주요성과 기능-객관적근거' 항목에 기술한 시험성적서 기준

- 단, 최초 자체(공인 포함) 시험자료 등 **발행 이전에 매출 실적이 있는 경우** 최초 판매일로부터 혁신시제품 지정 신청서 접수마감일까지

② 시험성적서: 공인 또는 자체 시험성적서

<유의사항>

1. 혁신시제품 지정 신청 시 제안서 '④ 혁신성-'② 제품의탁월성-③적용기술'에 표기한 **모든 지적재산권**(특허, 실용신안)에 대해 **특허적용 확인보고서**를 제출해야 함
2. 혁신시제품 지정 심사를 위하여 관련 법령(제·개정) 등에 따라 각종 인허가, 등록, 법정 의무인증 등이 필요한 경우, **반드시 관련 법령(제·개정) 등을 충족하는 제품**이어야 함

5

지정절차 및 지정평가

□ 지정 절차

- 신청서 접수 → 1차 서류 검토 → (서류통과업체) 공공성·혁신성 평가 → (합격업체) 2차 서류 검토 → 조달정책심의위 심의 및 지정

※ 혁신장터 → 혁신시제품 지정 → 혁신시제품이란? 참고

□ 혁신시제품 평가(1차 공공성평가 · 2차 혁신성 평가)

- 공공성 평가 : 신청시 제출한 ‘제안서·규격서’로 서면 심사
- 혁신성 평가 : 공공성 평가 통과 업체에 한해 진행, 대상업체는 평가 당일 총 20분간 대면평가 진행

* 혁신성평가 대상업체는 공공성평가 통과 후 개별로 연락 예정

- 발표 10분, 질의응답 10분
- 발표 자료는 제안서의 ‘**2** 제품정보(10페이지 이내)’로 한정
- 평가에 참석하는 인원은 심사 당일 아래 각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(해당업체 소속 임·직원만 참석 가능)

☞ (제출서류) 참석자의 4대보험 중 1개 이상 가입증명서류 1부(심사 당일 기준 발급분), 신분증 1부, 재직증명서 1부

<전략물자(드론 등) 품질경쟁력 제고 위한 평가 관리강화 안내>

※ (드론 평가 관련) 드론의 품질강화 방안으로 혁신시제품 혁신성 평가 시, 평가 현장에서 실물심사 등을 실시할 수 있음.

- 기업의 제안서 발표 시간은 15분, 평가위원의 질의·응답은 15분으로 진행함.
- 혁신제품 지정 시, 필수 시험항목을 규격서에 반영하여야 함 : 경로비행·경로비행시간 등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등 반영

※ 혁신시제품 평가 결과 조회 방법

- 혁신시제품 지정 신청 업체 : 혁신장터 로그인 → 상단 혁신시제품 지정 → 좌측 (업체)지정신청조회 → 평가결과조회 탭 → 평가결과 상세조회 클릭
- 그 외: 혁신시제품 평가 합격 확인
혁신장터 접속 (로그인 불필요) → 혁신시제품 지정 → (업체) 지정합격발표

□ 동 공고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「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(조달청 고시 제2023-34호('23. 7. 21.))」에 따르며, **공고기간 중 관련 규정이 개정될 경우 개정 규정을 적용하므로**, 관련 규정을 충분히 숙지한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□ 문의

구분	담당부서	연락처
혁신시제품 지정관련 문의	신성장조달총괄과	042-724-7664, 7420, 7217
신청문의	(재)한국조달연구원 혁신기업연구센터	02-6951-4072, 070-4304-2397, 070-4304-2394

□ 별도첨부

혁신장터 → [업체]혁신시제품 지정신청 → 신청공고건 선택 → 공고상세 → 첨부파일

- ① 혁신시제품 제안서(별첨 1)
- ② 혁신시제품 규격서(별첨 2-1, 2-2)
- ③ 약정서(별첨 3)
- ④ 협업승인신청서(별첨 4)
- ⑤ 기술·성능 비교표(별첨 5) ☞ 제출 시 기존제품 규격서 반드시 첨부
- ⑥ 공동수급체 협정서(별첨 6)
- ⑦ 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(별첨 7)
- ⑧ 혁신시제품 지정신청 FAQ(별첨 8)
- ⑨ 신규업체 혁신시제품 온라인신청 매뉴얼(별첨 9)
- ⑩ 혁신시제품(유형2) 신청 시 유의사항(별첨 10)

※ 혁신장터 → 혁신시제품 지정 → 신청공고건 선택 → 공고상세 → 첨부파일에서 확인

□ 공급자제안형 혁신시제품 평가 기준

평가 항목	평가 지표	세부항목	평가 기준	평가 배점	평점
1단계 - 공공성평가(적부 판정)					
공공적합성		분야적합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제안 분야에 적합한 솔루션 	적합 여부	
		공공현안 해결 및 대국민 서비스 향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공공의 현안을 해결할 수 있거나, 국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기술·제품인지 여부 - 공공업무 혁신, 공공경영 개선, 경제적 효용 향상 등 공공문제의 해결 또는 개선 여부 - 환경 보호·신산업 육성·국민안전 제고 등 사회적 가치실현에 기여하는지의 여부 		
		공공구매의 필요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신기술 적용제품·서비스의 공공구매 필요성 정도 - 국정과제 등 국가 주요정책과 관련성이 높은 제품 - 초기 시장 형성을 위해 공공구매 활용 필요 - 민간 구매가 힘든 신제품 또는 혁신제품으로 공공부문에서의 선도적 구매 필요성 		
		수요기관 구매 적합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해당제품·서비스의 수요기관 구매 가능성 정도 - 유사기능 제품이 이미 시장에 다수 존재하여 구매 유인이 낮지 않은지 등 기존제품과의 차별성 - 기존제품 및 제공 서비스 대비 가격의 적정성 - 사용자·구매기관이 특정 가능한지 등 구매 가능성 - 그 외 정책적·전략적 필요에 따른 구매 가능성 		
개발완성수준		TRL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기술완성수준 판단, 평가기관 검증 		
		안전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현장 적용 시 안전, 위생 등에서 문제가 없는지를 판단 		
		규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첨단 기술에 대한 규제 적용 가능성 (현재 규제요소, 규제 해소방안 등) 		
2단계 - 혁신성평가(정량평가) ⇒ 공공성평가 통과업체만 평가대상					
혁신적합성 (50점)		제품의 신규성(20점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기준에 존재하는 제품인지, 기존 제품과 새로운 제품이 융합된 제품인지, 기준에 없던 새로운 제품인지를 확인 		
		제품의 탁월성(20점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기 존재하는 제품·서비스 등과 비교하여 월등한 향상을 이끌어내는 혁신기술(혁신기술/주요 개량기술/보통 계량기술)이 적용되었는지 확인 		
		기술적 완성도 및 실현가능성(10점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기 확보한 보유기술의 수준과 제안 제품·서비스에 적용된 기술 수준의 차이에 대한 확인을 통한 기술의 완성도, 신기술 적용 제품·서비스의 사업화 실현 가능성을 확인 		
시장성(30점)		시장규모(15점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해당 제품·서비스가 창출할 신규 시장 또는 기존시장에 새롭게 차지할 시장 점유율 및 규모에 대한 확인 		
		파급성(15점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관련 기술·제품이 타 공공부문으로의 적용가능성, 유사산업 또는 타 산업에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 및 규모에 대한 확인 		
시범사용 수행역량(20점)		수행역량(20점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시범사용 계획, 목적 및 범위 설정의 타당성과 수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돌발 상황에 대한 대처능력 		

< 평가절차 >

○ 1단계. 공공성평가 : 세부항목 모두 적합인 경우 합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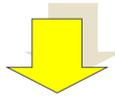


○ 2단계. 혁신성평가 : 세부항목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 혁신성 평가 통과

① 조달청 경쟁입찰참가 제조물품 등록 및 ② 물품식별번호 부여에 **30일 이상 소요될 수 있으니** 혁신시제품 지정 신청 전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.

* 처리기간은 업체의 준비서류 및 담당부서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**정확한 처리기간은 담당부서에 문의** 바랍니다.)

물품식별번호 부여 ▶ 물품목록과
 온라인 신청: 조달청 상품정보시스템(<http://www.g2b.go.kr:8051>)



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(세부품명번호 10자리 제조물품으로 등록)
 ▶ 콜센터, 조달청 등록팀, 각 지방 조달청 경영관리과
 ▶ 온라인 신청: 조달청 나라장터(<http://www.g2b.go.kr>)

※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(세부품명 10자리 제조등록) 및 물품식별번호 문의

☞ 조달청 경쟁입찰참가 제조물품(세부품명번호 10자리) 등록

- 콜센터 1588-0800
- 조달청 등록팀(070-4056-7507, 7189, 7162)
- 각 지방 조달청 경영관리과

☞ 물품식별번호 부여

- 물품관리과(070-4056-7271, 6463, 7182, 7257)

※ **온라인 신청방법:** 신규업체 혁신시제품 온라인신청 매뉴얼 참고

혁신장터 → 혁신시제품 지정신청 → 신청공고건 선택 → 공고상세 → 첨부파일